

DDA 협상 중간점검 및 FTA 추진과제



고 준 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 팀장)

■ 목 차 ■

1. 서언
2. WTO DDA 협상 난항
3. 2004년 우리의 쌀시장 개방약속 재협상 예정
4. 관세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 커
5. 서비스협상,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6. 반덤핑조치의 남용 방지를 위한 협상에 주력
7.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에 주목해야
8. 한-칠레 FTA 비준 여부가 시금석

1. 서언

200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1,744 억 달러, 수입은 1,61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32억 달러의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 18.3%의 증가를 기록하였다(표 1). 연말 기준으로 수출 1,945억 달러, 수입 1,7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의 전망치를 보면, 수출은 13.1% 증가한 2,200달러, 수입은 15.9% 증가한 2,060억 달러에 달하여 무역규모가 최초로 4,000억 달러를 크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는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00년 37.6%, 2001년 20.9%, 2002년 54.8%로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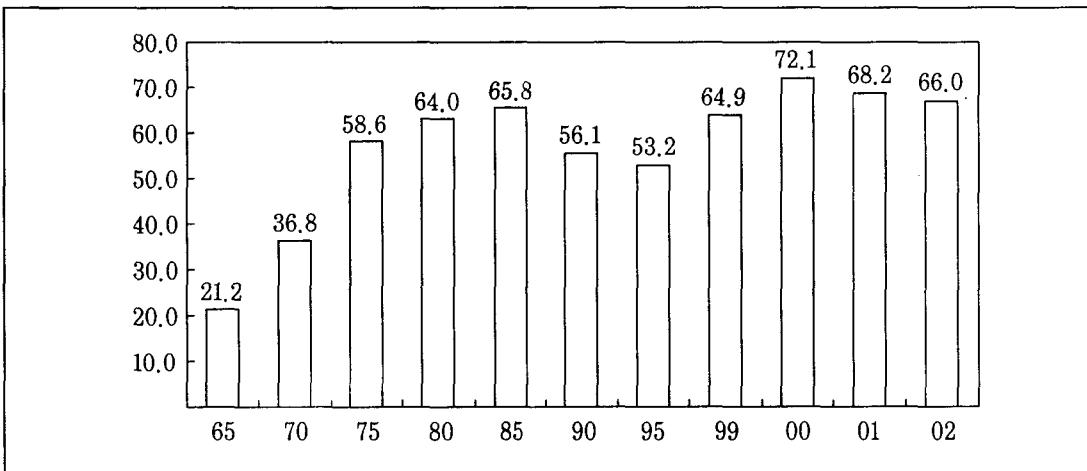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무역의존도 역시 1970-80년대 급속하게 상승하여 60%대로 진입한 후 1990년대 50%대로 떨어졌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60%대로 재상승하여, 2000년 대 이후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표 2), 이는 무역 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이나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0% 전후인 것에 비추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표1〉 2003년 11월중 수출입실적(단위 : US\$, %)

구 분	2003. 11월중	2003. 1~11월	2002. 1~11월
수 출	18,525,774(21.9)	174,408,000(18.3)	147,444,311(6.4)
수 입	15,741,919(12.5)	161,136,352(17.0)	137,674,279(6.1)
수 지	2,783,855	13,271,648	9,770,03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2003. 11)

〈표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추이



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무역의 40년 발자취와 비전, 2003. 11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교역대상국들과의 원만한 통상관계의 유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통상협상의 최대 과제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을 중간 점검하여 보고,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한 형태인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확산 및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WTO DDA 협상 난항

먼저 다자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 통상 현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주관하에 열리게 되는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출범에 합의하여 2002년 초 협상이 개시되었다. DDA 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 별로 협상기구를 설치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그간 주요 협상 시한이 하나도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서 금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싱가폴이슈 협상 개시 여부를 둘러싸고, EC는 싱가폴 이슈중 일부인 정부조달투명성과 무역 원활화만이라도 협상을 개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모든 이슈에 대한 협상 개시에

반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실제로는 농산물 수출보조 감축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를 EC와 미국이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이 실제적인 결렬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칸쿤 각료회의시 생점이 되었던 분야들에 대한 협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서비스와 분쟁해결절차 협상만이 진행되고 있다.

DDA 협상은 당초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바, 현재 DDA 협상의 정상화 여부는 2004년 초 개최되는 WTO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및 협상기구 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달려 있는 데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DDA 협상의 주요 쟁점별 논의 현황 및 대응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 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농업보조금의 대폭 감축 또는 철폐를 통한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고, EC,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 회원들은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한 무세화 및 개도국 우대조치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특히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의 폐지를 주장하여 회원국들간의 입장이 매우 복잡한데, 다행히 우리의 관심사항인 국내보조와 관세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다행히 큰 이견이 없었다.

3. 2004년 우리의 쌀시장 개방약속 재협상 예정

DDA 농업협상과 관계없이 2004년에는 쌀 시장 개방약속에 대한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즉, 지난 UR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유예조치를 2004년까지 10년간 인정받은 대신에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일정 물량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쌀을 수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도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특별대우를 유지하려면, 2004년중에 다른 쌀 수출국들과 이에 관한 재협상을 하여야 하는데 쌀 수출국들은 원칙적으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조치의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상당한 증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UR 농산물 협상 결과 이루어진 전면적인 농업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과 국내보조정책 및 시장개방 등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그간 농업부문의 양허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최소시장접근에 따른 쌀 수입 물량을 최소화는 것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와 같이 최소시장접근을 양허받았던 일본이 의무적인 쌀 수입에 따른 재고 부담으로 1999년 이를 포기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2004년의 쌀 재협상 과정에서 쌀 수출국들로부터 과도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강요받게 될 경우 일본과 같이 관세화로 일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브랜드 쌀 개발 및 마케팅,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 경쟁력이 낮은 농지의 축소 등과 같은 자구책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4. 관세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 커

공산품 및 임·수산물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비농산물협상에서 미국 및 스위스 등은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 및 분야별 무세화 분야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통한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였고,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회원들은 관세감축 폭의 경감 및 자발적인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비농산물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개방 확대를 도모하되 임·수산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신축성 확보를 위해 무역가중평균 관세 인하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무역가중평균 40%를 인하하되, 품목별 최소 감축 폭을 20%로 하고, 관세정점 및 고관세에 대해서는 기준 초과분의 70%를 추가 감축하는 방식이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임·수산물 등 고갈성 천연자원에 대한 분야별 무세화에는 반대한다.

향후 논의는 관세감축 방식과 분야별 무세화를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입장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양측간의 입장 차이가 위낙 커 타결 가능성성이 낮다.

5. 서비스협상,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주지하다시피 지난 UR협상은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최초의 다자간 논의였고, 그 결과 시장개방의 수준이 높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2000년 초부터 서비스후속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허협상은 WTO 하에서의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과 연계하여 2002년부터 DDA 협상의 일부로서 서비스 양허협상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DDA 서비스협상은 크게 모든 서비스분야에 수평적으로 적용될 규범분야 협상과 분야별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협상의 두가지 나누어 수행된다. 먼저 前者의 규범분야 협상에서는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 타결하지 못한 서비스분야에서의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및 정부 조달 등에 관한 규범 제정 작업이 GATS 규범제정작업반에서 2000년부터 진행중에 있다. 이밖에 서비스분류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국내규제의 투명성과 필요성 개념 등과 같은 기본 쟁점에 대한 논의 역시 병행하여 진행중에 있다.

〈표3〉 DDA관세협상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 비교

구 분	선진국(미국, EC등)	개도국(인도, 브라질 등)
주요 협상목표	대폭적인 시장개방	개도국 우대조치 확보
관세감축	본래의 스위스공식*	의장제안 공식(변형된 스위스 공식*)
분야별무세화	의무적 참여	자발적 참여

출처 : 재경부 DDA협상 동향 및 대응실적, 2003. 10.

*) 본래의 스위스 공식($t_1 = [a \ t_0]/[a+t_0]$)은 고관세 품목을 대폭 감축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의장제안공식($t_1 = [B \ ta \ t_0]/[(B \ ta)+t_0]$)은 계수(B) 및 평균관세율(ta)에 따라 감축 폭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개도국에 유리)

다음으로 後者의 분야별 양허협상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양허표안에 포함시킬 12개 분야의 155개 업종에 대하여 추가 시장개방 양허내용을 다룬다. 200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36개국에 1차 시장개방 요구서 (Initial Request)를 제출하였으며 25개국으로부터 개방 요구서를 접수받은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해운, 금융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회원국에 개방 확대를 요구하였고, 다른 회원국들로부터는 법률, 의료, 교육 등 지난 UR 협상에서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던 분야를 포함하여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받았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말 우리의 서비스시장개방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 분야는 처음으로 시장개방을 양허하였고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은 기존 양허 내용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영화상영, 라디오 TV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등은 제반 사정상 양허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DDA 서비스협상의 경우 시장개방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큰 분야이다. 또한 유통, 통신, 건설, 금융, 해운 등과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되는 상대국의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반덤핑조치의 남용 방지를 위한 협상에 주력

DDA 규범협상에서는 WTO협정중 반덤핑 협정, 보조금협정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의 규율 관련 규정의 명료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논의된다. 여기서 WTO 반덤핑협정은 UR 협상 결과 종전 GATT시기의 반덤핑규약과 비교할 때 그 객관성(objectiv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이 진일보하였고 따라서 회원국의 반덤핑당국에 의한 반덤핑법의 자의적인 운용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반덤핑 조사대상인 수출국 기업의 입장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적지 않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회원국의 반덤핑당국에 의한 반덤핑 법의 오용 내지 남용의 여지를 열어 주는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규정은 물론 규정 자체가 흡결되어 있는 사항 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실제로 일부 회원국의 경우 WTO 반덤핑협정상의 결점을 이용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조치를 남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간에 반덤핑조치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나아가

1)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에 의한 반덤핑 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치의 활동 국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시 건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 있어 예외를 제외하고는 1995년 157건, 1999년 356건, 2001년 330건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WTO, "Anti-dumping : Statistics on anti-dumping".

2) 지난 GATT시기에 있어 반덤핑조사 개시 이용을 살펴보면, 미국, 호주, 캐나다, EC등 4개 회원이 전체 조사 개시 건수의 8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WTO 출범 이후 2001년까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회원은 모두 33개이며, 이중 선진 국 회원은 EC,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6개 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7개 회원이 개도국 또는 체제전환 국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 선진국 회원에 의한 조사개시 건수의 비중 역시 총 779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WTO, "Anti-dumping : Statistics on anti-dumping".

WTO체제 출범 이후 회원국들의 반덤핑조치 이용이 지난 GATT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¹⁾ 동 조치의 발동국이 종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로부터 개도국 회원들로 확대되면서²⁾ 반덤핑조치가 회원국들간의 통상마찰의 주요한 잠재 요인의 하나로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 출범 이후 반덤핑절차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제소를 받음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에 있어 반덤핑조치는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통상규제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브라질, 인도 등 반덤핑협상에 있어 Friends그룹과 연대하여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협정 개정의 명분보다는 실익 관점에서 덤픽마진 산정방법의 개선(Zeroing 금지)³⁾, 반덤핑 조사개시 요건의 강화 등 실제적 조항의 개정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밖에 조사단계에서의 미소마진 등의 재심절차에서의 적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반덤핑협상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특히 덤픽판정의 요건에 관한 논의에 반대하고,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절차조항의 개선만으로도 현행 협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협상의 성패는 미국과의 교섭에 달려 있다.

이밖에 DDA 협상의제로서 UR 협상 이후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폴각료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소위 싱가폴의제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부재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

한다면서 이의 규제를 위한 규범 제정 요구가 EC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인도를 비롯한 다수의 개도국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운 분야중 하나로 남아 있다.

7.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주목해야

먼저 그간 GATT 및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 건수에 있어 변화를 살펴보면, GATT시기의 46년간(1948-94년) 통보된 RTA가 124건으로 연평균 2.7건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WTO 출범 이후 2003년 5월까지의 8년여간 통보된 RTA는 126건으로 연평균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WTO 출범 이후 매년 통보되는 RTA의 건수가 지난 GATT시기의 연간 통고 건수에 비해 무려 5.5배나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4). 이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RTA를 이용한 무역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 문서의 하나로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를 채택하여 RTA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간에 RTA, 주로는 FTA의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현재 다수의 FTA가 교섭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FTA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추세로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RTA의 지역별 체결 추이를 보면, GATT 출범 초기에는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체결되었으나 1960년대 중미지역,

3)여기서 zeroing이란 개별 덤픽마진의 합산시 국내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한 덤픽마진이 '부(-)'인 경우 이를 0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덤픽마진이 부풀려 지는 덤픽산정에 있어 오래된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피조사 기업으로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반덤핑 협상에서 수출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첫 번째 관심사항이다.

〈표4〉 GATT와 비교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건수 추이

기 간	GATT시기		WTO시기								
	48~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통보건수	124	11	15	16	13	23	11	19	19	8	135

출처 : <http://www.wto.org>(2003년 5월 검색).

〈표5〉 2003년 5월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별·시기별 체결 추이

지 역 별	GATT시기(1948~94)					WTO시기 1995~2001	총계
	1948~64	1965~74	1975~84	1985~94	소 계		
유 럽	2	8	1	13	24	40(9)**	64(9)
미 주	1	1	1	3	6	2(2)	8(2)
아 시 아			2	4	6	1	7
러시아·CIS					0	14	14
중 동			1		1		1
아 프 리 카					0	4	4
오 세 아 니 아			2		2	1(1)	3(1)
기 타		3	6	3	12	31	43
합 계	3	12	13	23	51	93(12)	144(12)

출처 : <http://www.wto.org>(2003년 5월 검색).

1970년대에는 아시아지역 등으로 확대되다가, 1980년대 중반 특히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표 5). 그 결과 오늘날 144개에 달하는 WTO 회원중 단 하나의 RTA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회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홍콩, 대만, 몽고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를 보면, GATT가 활동을 시작한 1947년부터 2003년 5월 현재까지 체결·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총 121건이다. 이 가운데 GATT 시기에 체결된 것이 27건인 반면 WTO 시기에 체결된 것은 83건에 이른다. 또한 1990년대 이후 FTA의 세계적 흐름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럽지역의 EC와 EFTA, 미주지역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 각 지역별로 이를 선도적인 지역 경제통합체를 축으로 체약국을 추가로 영입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당해 지역경제통합체의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특히 WTO 출범 이후 이를 대규모 지역경제통합체 상호간의 협력 확대나 연계를 통해 거대 경제블록의 형성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8. 한-칠레 FTA 비준 여부가 시급석

이와 같이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간의 FTA의 체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단 하나의 FTA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수출에 있어 그만큼 불리한 교역조건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부는 1998년 말 수출시장의 활로 모색을 위한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 첫 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여 양국간에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 10월 25일 3년여에 걸친 협상을 타결하여, 2003년 2월 15일 정식 서명하였고, 현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남겨 놓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 양국간 FTA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한일 양국간 산관학공동연구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양국 정부간 공식협상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2003년 상반기 싱가포르와 FTA 체결에 대비한 양국간 공동연구에 착수하였고, 2004년 초 양국 정부간 공식협상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FTA라는 특혜 무역협정을 통해 역내국들간에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극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추진에 있어 속도를 조정할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 같은 거대 교역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수출기업이 당해 국가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시장 점유율 감소와 같은 심각한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실제로 한-칠레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칠레가 EC 등과 체결한 FTA가 발효하면서 우리 자동차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2002년 2위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5위로 추락하였고, 대형칼러 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002년 28%에서 2003년 10%대로 크게 하락하여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서 다가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와 같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로부터의 고립이 가져올 교역 조건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한 과제임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The function of a genius is not to give new answering, but to pose new question which time and mediocrity can resolve.

천재가 할 일은 새로운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평범한 사람도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Hugh Trevor-Roper -